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4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김상훈 · 이현승 · 유용원
최보윤 · 윤한홍 · 이만희
박충권 · 이달희 · 김선교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 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이 따르고 있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과 관련한 결정에 관하여도 충분한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주주명부 폐쇄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실제 주주와 의결권행사자의 불일치

가능성도 크고, 이사의 보수 승인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 3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소집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1항 및 제3항).

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의결권의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의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4항).

다.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 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5).

라. 합리적인 주주제안이 가능하도록 이사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배당정책 등을 공시하도록 하며, 배당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안 제542조의16).

마. 주주명부 폐쇄 시 그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여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함(안 제542조의17).

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그 한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결의 하도록 함(안 제542조의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7조의3 중 “6週間전에”를 “7주간전에”로 한다.

제542조의4의 제목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결과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개요 등”을 “사업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사항을 통지”를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2주 내에 주주총회에서의 의

결의 결과를 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한 의결권의 수와 비율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에 있는 때에는 그 내역과 이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중에서의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비율도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5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의사진행 등”을 “의사진행, 주주 확인절차 등”으로 한다.

⑥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은 상장회사가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6(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상장회사가 제449조의2제1항에 기하여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정기총회회일 7주간 전부터 6주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뒤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1. 회사의 배당정책
2. 이익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에 관한 이사회 의견
3.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의 한도
4.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 및 배당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시가 없거나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때에는 제4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449조제1항에 따른다.

제542조의17(주주명부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제354조제1항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한다.

② 제354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제3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8(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가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여, 성과급여 및 그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기준보상, 퇴직금 산정액 및 그 밖의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그 한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7조의 각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주명부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447條의3(財務諸表등의 제출) 理事는 定期總會會日の <u>6週間</u> 전에 第447條 및 第447條의2의 書類를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u>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u></p>	<p>第447條의3(財務諸表등의 제출) -----<u>7주간</u> 전에-----</p> <p>-----</p> <p>-----</p> <p>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결과의 공고) ① <u>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u></p>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
영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신 설>

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
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 확인절차
에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도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은 상장회사가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을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⑧ -----
-----의사진행, 주주 확인
절차 등-----
-----.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제542조의16(재무제표 등의 승인
에 대한 특례) ① 상장회사가
제449조의2제1항에 기하여 제4
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
로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정기
총회회일 7주간 전부터 6주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뒤 제447조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1. 회사의 배당정책
2. 이익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에 관한 이사회 의견
3.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의 한도
4.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 및 배당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시가 없거나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때에는 제4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449조제1항에 따른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7(주주명부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제354조제1항의 기간을 2월을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신 설>

초과하여 정하지 못한다.

② 제354조제1항에 따라 상장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
는 질권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
일을 정하는 경우 제354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
할 날에 앞선 2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
률
제542조의18(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가 제388
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
는 고정급여, 성과급여 및 그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기준보상, 퇴직금 산정액
및 그 밖의 보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구분
하여 그 한도 및 구체적인 내
용을 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